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4821
----------	-------

제출연월일 : 2025. 12. 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생제수산물을 혼합하여 조제·가공·유통되는 식품인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의 포장 등에 무항생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무항생제수산물을 활용한 각종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는 관련 어업인의 인증 수요가 없어 활용도가 없으므로 해당 인증제도는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무항생제수산물

제2조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이란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생제수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각각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제4조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원료

가공식품”으로 한다.

제5조 중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각각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제6조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지원”을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의 육성·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의 인증”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을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각각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본문 ·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각각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무농약표시”를 “무농약표시 또는 무항생제표시”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을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각각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표시기준 등)”을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 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전단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를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에”로, “무항생제(축산물 또는 수산물만 해당한다), 활성처리제 비사용(해조류만 해당한다)”을 “무항생제”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표시”를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표시”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이나 무항생제수산물”로,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무농약 표시”를 “무농약농산물이나 무항생제수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 또는 무항생제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각각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2호 중 “제5호의2”를 “제5호의2·제5호의3”으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③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 및 제39조제1항제7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각각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④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7호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각각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⑥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4호 중 “제5호의2”를 “제5호의2·제5호의3”으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⑦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5호의2”를 “제5호의2·제5호의3”으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 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u>	다. <u>무항생제수산물</u>
<u>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u>	
<u>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u>	
<u>라 한다)</u>	
3. ~ 5의2. (생 략)	3. ~ 5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의3.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u>
	<u>이란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u>
	<u>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u>
	<u>과 무항생제수산물을 혼합하</u>
	<u>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u>
	<u>품을 말한다.</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7. -----
<u>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u>	----- <u>무농약원료가</u>
<u>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u>	<u>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무</u>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u>항생제원료가공식품 -----</u>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생 략)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

8. (현행과 같음)

9. -----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② -----

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제4조(사업자의 책무)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

-----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지원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

제2장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의
육성·지원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생 략)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 11. (생 략)

③ (생 략)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7. ~ 11.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① -----

-----.

1.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2. (생 략)

② (생 략)

제4장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
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제34조(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
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
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
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
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
생제수산물등의 생산, 제조 · 가
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
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
품 · 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제34조(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
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의 인
증 등) ① -----
-----무농약원료가공
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
생제원료가공식품---.

② -----
-----무농약원
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
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
식품-----

-----.

③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또

등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

는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무
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
산물 또는 무항생제원료가공식
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또는 무항생
제원료가공식품-----

④ -----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
항생제수산물 또는 무항생제원

다.

⑤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
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
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
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
품등”은 “무농약농산물 · 무농
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
수산물등”으로, “제한적으로 유
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
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
품”으로 본다.

제35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
료 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무
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
제수산물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료가공식품

— —

⑤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무농
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
물 또는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무농약표시 또는 무항생제
표시-----.

제35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
료 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
및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의 인
증기관 지정 등) ① -----
-----무
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
산물 또는 무항생제원료가공식
품-----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유효기간·갱신·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무농
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
물 또는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

② -----

---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
생제수산물 또는 무항생제원료
가공식품-----.

– 17 –

③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그 밖에 표시사항 등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
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표시”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본다.	<u>원료가공식품</u> -----
	-----.
제54조의2(명예감시원)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친환경농수산 물, 유기식품등, <u>무농약원료가</u> <u>공식품</u>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유통에 대한 감시·지도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의2(명예감시원) ① ----- ----- ----- ----- ----- ----- <u>무농약원료가</u> <u>공식품,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 기능 증대와 친환경농어업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 농수산물· <u>무농약원료가공식품</u> 또는 유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 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우선구매) ① ----- ----- ----- ----- ----- <u>무농약원료가공식품</u> <u>·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u>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